

202.14 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 본인은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 29-a항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후속 지시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한 행정명령 202호 및 행정명령 202호의 후속 행정 명령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모든 법과 기타 지시의 중지 및 개정을 다음에 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5월 7일까지 연장합니다.

추가로,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 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은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5월 7일 목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또는 미국 접골 연합(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으로부터 의학 교육에 대한 교육 인증을 받았거나 의학 대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2020년 졸업하는 의사가 뉴욕주 또는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면허를 가진 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Education Law) 6524항,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제8장 60.7항, NYCRR 제10장 부속조항 (g) 405.4 (1)절.
- 모든 환자, 법적 보호자, 법적 대리인을 비롯해, 의료 시설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사람은 서면을 통해 관련 조항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대기 보호자를 지정하며,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정이 유효하게 되는 대리모 법원 절차법 1차 보호자대리 법원 절차법(Surrogate's Court Procedure Act) 1726항 세부조항1, 2, 4, 5, 8, 9이 변경됩니다.
- 금융법(Insurance Law) 제43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금융사 및 기업의 유동성 및 지불 능력에 대한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감독관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금융법 3216(d)(1)(C)항 및 4306(g)항 또는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44조에 따라 인증을 받는 건강 유지 단체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별 정책 또는 계약에 따른 종합 건강 보험 계약자 또는 계약자에 대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해당 계약 유예 기간 만료 후 2020년 6월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연장합니다.
- 보험법 제43조의 대상인 적용 가능한 보험사 및 법인 또는 공중보건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인증된 보건 관리 기관이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의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기간 동안 프리미엄의 미납으로 인한 보험 정책이나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지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본인은 다음의 지시를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5월 7일 목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효합니다.

- 뉴욕주의 단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뉴욕주 내에 위치한 모든 의료 장비(개인 보호 장비(PPE), 인공 호흡기, 마스크, 이중양압기, 마취, 기타 보건 커미셔너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장비 또는 소모품)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DOH는 뉴욕 병원, 시설 및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즉각적인 필요가 있는 장소에 배급하기 위해 현재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그러한 재고가 필요한 시설로 옮길 수 있습니다. DOH는 긴급한 필요가 사라진 즉시 재고를 반환하거나, 예산과(Division of the Budget)와 협의하여 인수 당시 시장 가격에 따라 취득한 재화 또는 자재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지불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및 개인에게 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 공공 및 민간 모임 장소를 폐쇄 또는 이용 제한하고, 모든 목적(파티, 축하, 게임, 미팅 및 기타 사회적 모임)의 비필수적인 개인 간의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3호, 202.4호, 202.5호, 202.6호, 202.7호, 202.8호, 202.10호, 202.11호, 202.13호, 202.13호에 따라 이러한 모든 행정명령은 향후 기타 행정명령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행정명령의 만료일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2020년 4월 2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모든 대면 영업 제한 및 직장 제한을 연장합니다.
- 2020년 4월 7일 이후 모든 이전의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단속 명령에 더하여, 제한 지침 위반은 공중보건법 제12-b (2)항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보건 커미셔너는 비상 규제를 발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조항을 위반하여 모임에 참가하거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유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한 개인에게 1,000 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주 전역의 학교 폐쇄와 관련된 행정명령 202.4호에 포함되었으며 행정명령 202.11호에 따라 개정된 지시는 폐쇄 명령이 재검토될 2020년 4월 29일 수요일까지 모든 학교가 폐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모든 학교는 여기에 명시된 기간 이상으로 폐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사태의 결과로 인한 180일 의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축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필수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대체 교육 옵션, 식사 제공, 보육에 대한 계획을 지속하고 남아 있는 방학 및 폭설 휴가를 먼저 사용해야만 합니다.
- 보험법 제43조의 대상인 보험사 및 법인, 공중 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건 관리 단체 또는 보험법 112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학생 보건 계획 등의 유동성 및 지불 능력에 대한 금융 서비스부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금융 서비스부 감독관은 비상 규제를 선포하여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험 가입자 또는 계약장을 위해 보험법의 조항에 따라 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가 전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또는 학생 보장 종합 건강 보험 정책 또는 계약, 기타 아동 건강 보험 정책 또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불 기한을 계약 만료 이후, 그리고 2020년 6월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그리고 그리고 보험법 제43조의 대상인 적용 가능한 보험사 및 법인 또는 공중보건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인증된 보건 관리 기관, 또는 보험법 112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학생 보건 계획 등이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의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기간 동안 프리미엄의 미납으로 인한 보험 정책이나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지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합니다.

- 금융 서비스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여 본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규정을 공포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1) 연체료의 면제, (2) 신용 조사 기관에 부정적인 데이터 보고 금지.
- 재산권 및 신탁법(Estates Powers and Trusts Law, EPTL) 3-2.1(a)(2), EPTL 3-2.1(a)(4), 공중 보건법 2981(2)(a), 공중 보건법 4201(3),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 제9조, 일반 의무법(General Obligations Law) 5-1514(9)(b), EPTL 7-1.17의 목적에 따라 뉴욕주 법에서 정한 바에 의거한 공증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 공증을 원하는 사람은 공증인과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전후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회의 중에 공증인에게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공증할 수 있습니다.
 - 화상 회의는 가능한 경우, 사람과 공증인, 감독 변호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서명자의 사전 녹화된 동영상 불가 등).
 - 공증인은 서명이 된 페이지의 또렷한 사본을 수령해야 하며, 이 문서는 사람이 서명한 날과 동일한 날에 팩스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해 전송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은 전송받은 서명 페이지에 사인하여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이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공증 사본과 함께 서명된 원본 문서를 받은 경우 집행 당일에 서명된 원본 문서의 공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7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